

우루과이라운드와 농축산물 수입개방 협상

홍 보 부

우루과이라운드란?

1.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개요

가. 우루과이라운드란?

○ 우루과이라운드란 86. 9 남미의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GATT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교역확대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출범한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개최지역명을 따서 Punta del Este 각료선언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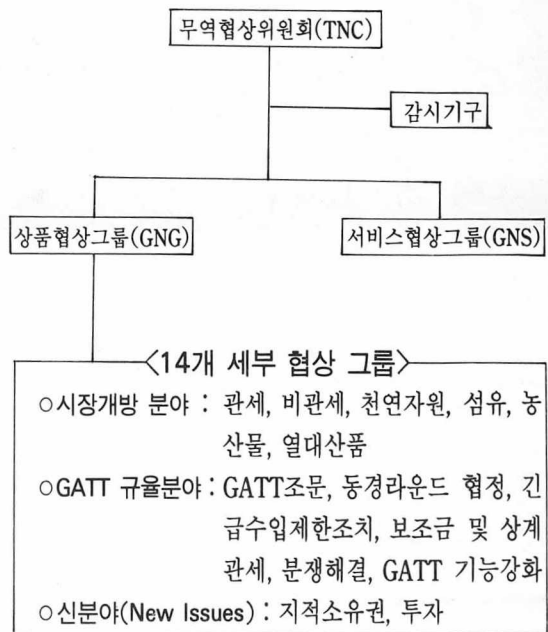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대두 배경

- '80년대에 들어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확산으로 비관세 장벽의 남용사례가 증가되고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GATT 체제안으로 끌어들이어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 대두
-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도기술상품의 교역이 증가하고 금융, 운송, 통신 등 서비스교역도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GATT에서 다루지 않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다자간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 대두
- 국제수지흑자, 통상마찰 등 문제를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해관계 일치

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목표

-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규율 강화
- New Issues에 대한 규범 마련

라. 협상 체계



마. 협상기간 : '90. 12. 3~7, Brussels 각료회의에서 종결 예정

2. 협상추진상황 및 전망

가. 선진국은 자국의 관심분야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시키면서도 개발도상국의 관심분야에는 다소 소홀하여 협상의 이익이 참가국간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대두

- 서비스·지적소유권·투자 등 선진국 관심분야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소극적인 반응속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협상진행
- 농산물분야 협상에 있어서는 미국·호주 등 수출국과 EC·일본 등 수입국간 보조금 감축수준과 방법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
- 수출국들은 일부 선진국이 남용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이나 덤핑에 대한 과도한 제한조치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이에 소극적

나.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의 기간 내 타결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협상타결 예상

- 농산물, 섬유, 지적소유권, 서비스 등 주요그룹의 협상은 협상 최종단계까지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나 협상주도국인 미국과 EC간에 이견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협상진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일층 강화
- 협상 실패시 세계무역환경 악화에 대한 회원국의 공통인식 확산
- 미국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각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재개하고 멕시코를 포함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추진할 전망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부담이 되는 측면

- 농업분야의 사실상 전면 개방
 - 각종 비관세 조치의 관세화 및 이의 점차인하 불가피

- 일정기간내 수출보조금과 국내 보조금의 대폭 감축 불가피

○상품분야에 이어 서비스 및 투자분야까지 시장개방 확대

-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통신·교통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단계적 개방 불가피

- 국산품과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외국인 서비스영업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불가피

- 관세의 인하(1/3) 및 대폭양허에 따른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 약화

- 금융·세계 등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공정무역체제 강화에 따른 GATT 규율 준수 의무 증대

- 각국의 무역정책 및 개방화 추진에 대하여 GATT의 감시체제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국제적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내 정책이 GATT 규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 필요

- GATT 규율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지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불공정 사례가 상품교역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나. 긍정적인 측면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에 따른 세계 무역환경 개선

- 슈퍼 301조 협상, 쌍무주의에 의한 시장개방 압력 완화

- EC통합 등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보호주의적 요소 완화

○수출시장과 해외진출여건 확대

-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시장개방 등)

-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부과에 대한 규율 강화

- 해외투자 자유화에 따른 진출여건 개선

○시장개방에 따라 장기적으로 원활한 산업구조조

정 진행

- 섬유, 서비스 등

⇒ 새로운 국제교역규범의 정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구조의 개편 등 우리경제의 국제화 적응능력 향상이 시급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1. UR 농산물 협상의 추진 배경

○ 농산물 협상의 추진배경으로는 국제농산물 수급 구조의 변화와 미·EC 등 선진국 농업정책의 한계 등 2가지로 파악될 수 있음.

가. 국제교역환경 변화

(1930~1970년)
(농업의 안정적 성장)

- 농산물수입국 - 농업 투자외 확대로 자급 달성에 주력
- 농산물수출국 -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투자증대

(1980년대)
(세계경제 침체로 보호주의 경향 대두)

- 농산물수입국 - 국제산업 보호를 위한 관리무역 대두
- 농산물수출국 - 수출 감소와 과잉생산으로 재고 증가
- 저개발도상국 - 만성적인 식량부족

나. 미·EC·일본 등 선진국의 농업정책 한계

○ 농업지원과 수출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 소비자 잉여감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 증대
- 농산물 무역분쟁 확산(미·일간 무역분쟁, 미·EC간 보조금 분쟁 등)

2. 우리나라의 협상여건

- 농수산물 수입국으로서의 위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아국 협상력은 매우 취약
 - 국가 전체적으로 GATT의 교역자유화를 지지해야 할 입장이나, 농산물 분야만은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최대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상황임.
 - UR 농산물 협상은 미국·EC 등 수출강대국 주도로 추진됨으로서 수입국농업에 대한 예외적 보호조치를 인정않는 방향으로 전개
 - 우리나라 경제발전수준은 '90년대초 선진국 진입에 예상되고 있어 여타 개도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한계
- 농산물교역 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필수농산물의 보호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 '89. 10 GATT/BOP 졸업결과 관련, 잔재수입제한 품목(406개)도 '97까지 자유화 또는 GATT 규범에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 부담
 - UR에서 농산물 교역의 대폭적 자유화가 태의될 경우 필수 농산물의 보호근거 양실 우려

3. 주요협상 의제

가. 협상목표

-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계의 확립
- 이의 실천방법으로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GATT규범의 제정과 농업보호 및 지지수준의 상당한 감축방안 강구

나. 주요협상 의제

- (1) 국경보호(Border Measure)
 - 현행 농산물 관세인하 및 양허확대
 - 모든 수량제한 등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
- (2) 국내보조(Internal Support)
 - 농산물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보조금 감축
- (3)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 수출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
- (4)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
 - 관련 국제기준에 합치운영함으로써 무역규제 효과의 최소화
- (5)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 (6) 개도국 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4. 의제별 논의내용(의장 합의안)

가. 국경보호조치(Border Protection)

- 모든 비관세조치의 철폐로 농산물교역 자유화 확대
 - 기 자유화된 농산물의 관세는 현행수준에서 GATT에 양허
 - 현재 남아있는 수입제한 품목은 모두 자유화하여 관세로 전환
 - 초기에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고율 관세 부과
 - 금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기간내에 이를 상당 수준으로 감축

나. 국내 보조

- 농산물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농업 보조정책은 점진적으로 감축
 - 농산물가격지지, 농가소득보조, 비료·농약 등

농업자재 보조, 영농자금 저리융자, 자본보조 등

- 허용되는 정책도 현 수준이상 확대불가 및 GATT의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됨
 - 조사·검사 등 일반서비스, 환경보전, 순수화제 보상 등

다. 수출 경쟁

- 수출보조금의 관세화 및 국내보조금의 감축보다 이의 급속한 감축

라.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 별도 작업반의 합의결과를 수용
 - 과학적인 조명을 기초로 하여 교역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

마. 개도국 우대

- 개도국은 협상결과 이행에 있어서 특별대우 부여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업개발 정책은 허용되나, 국제무역에 영향이 없고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야 하는 엄격한 조건임.
 - 개도국의 수입제한 품목도 모두 자유화하되 유예기간과 이행에 다소의 신축성을 부여함.

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 식량안보, 고용안정, 지역개발 유지를 위한 기초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내보조에서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국경보호에서 관세화를 할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사. 각국이 모든 국내보조정책 및 관세·관세상당액(T.E.)을 GATT에 제출

- 제출기한 : '90. 10. 1까지 Country List로 작성·제출
- Country List의 내용
 - 품목별 국내지지수준 및 보조측정기준(AMS)

에 의한 산출치

- 감축약속대상에서 제외될 정책
- 모든 수출제한품목의 관세상당액(T.E.) 산출 내역
- 품목별 최초 쿼타 수준
- 이미 자유화된 품목의 현행세율(GATT에 양허 대상)
- 최근 3년간의 각종 수출보조금 내역

5. 협상의 전망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가. UR 농산물 협상 전망

- 농산물교역의 완전자유화와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조치의 감축
- 대다수 수입자유화 품목은 관세화 대상
-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NTC)가 유일한 수입제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

나.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 기존 국내농업 지원정책의 감소 불가피
 - 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 장·단기 저리 영업자금 지원, 차액보상, 일부 농업구조개선대책 등
- 수입제한 품목의 자유화 및 관세전환 불가피
 - 모든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와 동시에 관세상당액 부과
 - 그러나 관세상당액은 계속 감축됨으로서 경쟁력이 위약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 예상
 - 특히, 현재 수입이 거의 없는 품목도 일정량의 수입 허용 불가피
-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곤란
 - ⇒ 국민식량의 안정공급과 농가소득의 확보를 위한 농업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협회가입안내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돈인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본회는 양돈인의 공동관심 사항을 능률적으로 실현시킴으로서 양돈인의 사회경쟁력 지위향상은 물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격 : 돼지 50두 이상 사육자

◎ 가입절차 : 9개 도협의회 및 산하 100개 지부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제출

◎ 회원의 혜택

- 정책 및 제도개선
- 본회의 각종사업에 동참
- 국내외 양돈정보 제공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지도
- 월간양돈·주간양돈정보지 무료제공
- 공인 종돈능력검정 등 우수종돈 구입시 혜택
- 약품 및 기자재 알선
- 공동시설물 이용 및 공동경제 활동 참여
- 한국양돈진흥사업회의 사업동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및 각 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양돈회관 4층)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553-3942~6)